###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477

제안연월일: 2025.2.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의 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전체회의 상정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785	강대식의원	2024. 6. 21.	2024. 8. 27.
	2202214	전용기의원	2024. 7. 24.	2024. 8. 27.

-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 심사소위원회(2024.9.24.)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2024.9.25.)에서 법률안심사소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2024.9.25)에서 의결한 「예

비군법」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안(2200785), 정용기의원안(2202214)) 은 「예비군법」대안(의안번호: DD20067)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나, 회부한 「예비군법」대안에 대해 강대식 의원이 번안 발의 (2025.2.6.)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예비군법」대안을 반려 요청 (2025.2.7.)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려(2025.2.17.)되었음.

마.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25.2.20.)에서 번안 의결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교통비 등으로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을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의 장에게는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교육 현장 일선에서 출결 여부를 결정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교직원의 불이익 처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사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 외에 교직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2).

- 나.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의2제1항).
- 다.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급식과 그 밖의 실비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법률 제 호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학교의 장"을 "학교의 장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실비 변상)"을 "(훈련비 등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중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사람"을 "사용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
런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런 관련 학업 보장)
이상의 <u>학교의 장</u> 은 예비군대	<u>학교의 장 및 교직원</u>
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	
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	
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1조(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제11조(훈련비 등 지급)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	
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u>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u>
<u>수 있다</u> .	(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① ~ ⑦ (생	제15조(벌칙) ① ~ ⑦ (현행과
략)	같음)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	8
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	
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u>사람</u> 은 2년 이하의	사용자 또는 고등학교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u>이상의 학교의 장</u>
금에 처한다.	

⑨ ~ ⑫ (생 략)제15조의2(과태료) <신 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과태료) ① 제10조의2
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은 50
①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